



**석도국제훼리(주) ·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 협약서



석도국제훼리(주)와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은 상호간 산학협력 지원활동이 상호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석도 국제훼리(주)와 사업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산학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협력
2.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산학협동 프로그램 개발)
3. 연계교육과정, 인턴십 및 현장실습 시행 등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 (인력교류)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소속 인력(학생 포함)을 파견,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양 기관은 파견, 현장 실습 및 위탁교육 중인 인력에 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예우를 한다.

제4조 (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동의를 거쳐 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내부 처리기준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정보교환) 양 기관은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정책정보와 관련된 제반자료를 상호 교환·활용하며 상대 기관의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6조 (공동연구 등) ① 양 기관은 상호 별도협약에 의하여 공동연구 및 상대기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보고서, 시작품 등)은 양 기관의 합의를 거쳐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상호지원) 양 기관은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이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8조 (기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은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신의 · 성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10조 (효력의 발생 및 유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여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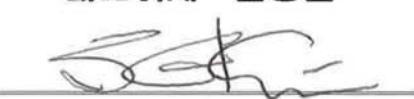
제11조 (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 서명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17일

석도국제웨리(주)

대표이사 김상겸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

단장 고현정

